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06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소병철・김병기・김정호

임호선 · 장철민 · 맹성규

박재호 • 백혜련 • 권인숙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(이하 "박람회"라 함) 유치가 AIPH(국제원예생산자협회)에서 최종 승인(2020.3.3.)됨에 따라 2023년에 범국가적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상황임.

이에 「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」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82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※ 위 특별법은 2021.6.24. 농해수위를 통과함

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3. 「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 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